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0618 제출연월일 : 2025. 5.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방식을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안 제3조)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와 피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속세 납부의무자 변경(안 제3조의2)

-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되,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다른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2)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해 당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를 지도록 함.
- 다.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안 제10조의2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의 상속취득재산에 포함하도록 함.

라.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에 따른 상속공제 개편(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현행 제18조 및

제21조 삭제)

- 1) 상속세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함.
- 2)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은 5억원, 그 외의 상속인은 2억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수유자는 5천만원, 그 외의 수유자는 1천만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도록 함.
- 마. 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안 제27조의2 신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 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중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이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속인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 * 우회상속인: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 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기한 신설(안 제67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 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되,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 및 「민법」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을 "피상속인이 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상속취득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및 제15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 또는 채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및 제3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외국인거주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모든 상속취득재산
 - 2.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단기외국인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취득재산

-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또는 수유자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또 는 단기외국인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취득재산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 및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다른 상속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다른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2.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 지장수를 하여도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3.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이 상속세액보다 적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자"라 한다)와 실제로 그 상속취득재산이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귀 속자"라 한다)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귀속되는 상 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귀속자와 명의자 가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한다)으로"를 "한다)을 하거나 제67조제11항에 해당하게 되어"로, "상속분"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상속분"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주등"을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주주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조세채권(租稅債權)"을 "조세채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으로, "한다)를"을 "한다)가 국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지를"로, "과세한다"를 "상속세를 과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

- 을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과세한다.
- 1.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재지(상 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
- 2. 국내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국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하고, 거소 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거소지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제9조의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을 "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또

는 수유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제9조제2항 중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를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해당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이"를 각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로,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를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을 "것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다.

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의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유증등을 받는 경우의 상속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특정법인의 이익 및 상속세액의 계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비과세되는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을 "한다)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을 "정당이 유증등을 받은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을 "단체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으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를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가액 또는 비용 중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과금등부담분"이라 한

다)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과금등부담분이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3조제3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14조의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을 "(상속취득 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을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을 "피상속인이 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을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

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를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분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상속세"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를 각각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상속취득재산"으로, "범위 및"을 "범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및"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상속세"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를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에"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를 "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4항 중 "상속재산의"를 각각 "상속취득재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를 "해당 상속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항을 적용할 때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 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만, 상속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의 안분비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를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에"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를 "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명 이상의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는 30억원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영농상속재 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만, 상속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의 안분비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비율로 안 분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제18조의4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라 한다)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이 경우 계산한 한도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으로 한다.

한도금액 = (A + B) × C

- A: 배우자 및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취득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B: 배우자 및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별로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 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C: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분(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분을 말한다)

2. 30억원

- ② 제67조제11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1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경우: 5억원
 - 나. 가목 외의 자인 경우: 2억워
 - 2. 수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5천만원
 -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 의 인척인 경우: 1천만원
 - ②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가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증여공제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공제합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

-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1억원
- 2. 수유자로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위
- ④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동거가족으로 한정한다)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1. 미성년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1천만원에 19세 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65세 이상인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인 경우: 5천만원
- 3. 장애인인 경우: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⑤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및 수유자 각자가 제19조 및 이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받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라 수유자로 본다.
- ⑦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거가족의 범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⑨ 제2항에 따라 증여공제합계액을 공제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증여세"는 "상속세"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 및 수유자에 태아를 포함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취득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

(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가액"이라 한다)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의 순금융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이 호에서 "순금융재산합계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합계액의 100분의 20(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나. 순금융재산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합계 액
- 2. 해당 상속인의 순금융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중 순금융재산가액이 0보다 큰 상속인의 순금융재산가액의 합계액으 로 나는 비율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7조제11항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유증등 및 「민법」 제1009조에따라 순금융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

무가 있는"으로,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을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상속주택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억원"을 "6억원에 상속주택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배제)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및 제23조의2 는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상속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 의2에 따른 상속공제액

제2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산출세액에 그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다.

제2장제6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① 피상속인의 특수 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특수관계인과 피상속인 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에서 "우회상속인등"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속인등이 그 증여받은 재산(이하 "우회 상속취득재산"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 속세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한 세액

- 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 에서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나.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우회상속인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

산(우회상속취득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한 상속세액

- 라. 우회상속인등이 우회상속취득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액
-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한 세액
 - 가. 우회상속인등이 우회상속취득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 산한 상속세액
 - 나. 제1호가목의 재산에서 우회상속취득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상속세액
 - 다. 제1호나목의 재산에서 우회상속취득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증여세액
-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우회상속인등은 우회상속 취득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우회상속인등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다.
- ④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등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우회상속취득재

산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등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우회상속인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2. 우회상속취득재산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의 가액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상속재산에 가산한"을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으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을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

는 상속재산"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으로 한 다.

제30조제1항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세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의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	상속취득재산의 가액
대하여 부과된	*	리시 기소리도 제기시 교(제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

제54조 후단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6개월"을 "6개월(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및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기한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인이 그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상속인또는 수유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제1항에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및 제14조에 따른 가액 또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등"이라 한다)을 분할(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등에 대하여 유증등으로 받은 상속취득재산과「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⑦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분할대상상속 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

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등분할기한"이라 한다)까 지 해당 상속재산등을 분할한 후 그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취 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및 제25 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등분할신 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등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등분 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등 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 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상속재산등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⑧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하기전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할 수 있다.
- ⑨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 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 8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 후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한 결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 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①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유증등 및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별"을 "상속취득재산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재 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75조 후단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제67조나"를 "제27조의2제2항, 제67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취득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무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유증등 및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상속세 결정·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중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에서 제외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포함한다.
- 제6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상속이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그 사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

속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30조제2항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의 가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전의 상속재산의 가액

제7조(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상속취득재산 확정 후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 개시 후 그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증여 재산 중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

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재산 또는 채무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제11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및 그 한도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3조(상속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관하여는 제2

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관하여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부연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연부연납, 물납 및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1조, 제73조, 제7 3조의2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5항제6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 3조까지"를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제6호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8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을"로,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가산한다"로 한다.

제71조제6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상속재산가액(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를 "상속 취득재산가액(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	1
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	
시일 전 10년 이내에 <u>피상</u>	<u>피상</u>
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	<u>속인이 진</u>
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	
<u>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u> 증	
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	
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	
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상속취득재산"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으로 인하여 상
	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
	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4. ~ 10. (생략)

-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다음 각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가산하는 증여재산 및 제15조에
 -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 2. <u>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u>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및 제15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 또는 채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외국인거주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경우: 모든 상속취득재산
- 2.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 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또는</u> 단기외국인거주자이고 <u>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u> 든 상속취득재산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또 는 수유자와 피상속인이 비거 주자 또는 단기외국인거주자 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취득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이하같다)는 제3조 각호의 구분에따른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당하는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해당 상속 인 및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다른 상속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다 른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 을 상속취득재산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 | 2.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 | 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 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상속 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 기 곤란한 경우
- 3.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이 상속세 액보다 적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취 득재산의 명의자(이하 이 항에 서 "명의자"라 한다)와 실제로 그 상속취득재산이 귀속되는 자 (이하 이 항에서 "귀속자"라 한 다)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 액에 대하여 귀속자와 명의자가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 (생 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 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 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

취늑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
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한다)을 하
거나 제67조제11항에 해당하게
<u>되어</u> <u>상속취득재산</u>
<u>상속취득</u>
<u>재산</u>
<u>상속취득재산</u>
<u>상속취득재산</u>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생략)
-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증여재산
- ②・③ (생 략)
-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 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 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해당 법인의 <u>주주등</u>에 대해 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 ⑤ (생략)
-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2
제6조제3항
제6조제3항
제6조제3항
제6조제3항
<u> </u>
및 제4항
<u> </u>
②·③ (현행과 같음)
4)
<u>주주 또는 출자</u>
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
⑤ (현행과 같음)
6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 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 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 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 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u>조세채권(租稅債權)</u>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생략)
- 제6조(과세 관할) ① <u>상속세는 피</u> <u>상속인</u>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 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 시지"라 <u>한다)를</u> 관할하는 세무 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

⑦ ~ ⑨ (생 략)

<u>.</u>
1
고 계 테긔
<u>조세채권</u>
2. · 3.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6조(과세 관할) ① <u>피상속인</u>
한다)가 국내인 경우에
는 상속개시지를

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 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 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상속세를 과세한다. <단서 삭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 제>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 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 다. <신 설>

- ②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과세한다.
- 1.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 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 재지(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 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 재지)
- 2. 국내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 우: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국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 소지)

②·③ (생 략)

<신 설>

제1절 상속재산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 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생략)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 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주소지가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하 고, 거소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 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을 거소지로 한다.

제1절 상속취득재산

제8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보 험금) 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 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 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가 지급받는 보험금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상속취득 재산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신 탁재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 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 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 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u>가액(價</u> <u>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u> 額)은 <u>상속재산</u>으로 보지 아니 <u>가액(價額)은 상속취득재산으로</u> 한다. 본다. -----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 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u>경우</u> 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u>타인이</u> 새로 신탁 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u>타인이</u>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u>사망한 수</u> <u>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u>.

④ (생 략)

제10조(<u>상</u>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제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 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u>것이 피상속인</u>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796 0116 90 699
가액(價額)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u>가액은</u>
<u>상속취득재산</u>
.
②
<u>경우</u>
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인 또는 수유자가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u>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u> .
③
<u>상속인 또는 수유</u>
<u> 자가</u>
<u>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u>
<u>상속취득재</u>
<u>산으로 본다</u> .
④ (현행과 같음)
10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퇴
직금 등)
<u>것 중 피상속인</u>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 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6. (생략) <신 설>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는 수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상속취득재산----. --------- 상속취득재산-----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상속취득재산으로 보 는 특정법인의 이익) ① 지배주 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 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 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 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이하 "유증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 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의 지배주주등의 상속취득재산 으로 본다.

제12조(비과세<u>되는 상속재산)</u> 다 저 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 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 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 2. 삭 제
- 3. (생략)
- 유증등을 한 재산

12소 <u>(미과세되는 상독주</u>	키득새산)
1	
	한다)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	

- 3. (현행과 같음)
-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4. ----- 정당이 유증등을 받은 재산

-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 증등을 한 재산
- 6. (생략)
-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 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에 증여한 재산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 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 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 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 한 재산가액
 -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게 증여한 재산가액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 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

5		
		- – –
	단체가	유
증등을 받은 재산		

- 6. (현행과 같음)
- 7.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 또 는 수유자가 제67조제1항---

세 과세가액은 상속인 또는 수 유자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 서 제14조에 따른 가액 또는 비 용 중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공과금등부담 분"이라 한다)을 뺀 후 상속개 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 우 공과금등부담분이 상속취득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 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3조제3

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 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 을 가산한다.

③ (생략)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 제14조(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 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 | 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1. · 2. (생략)
-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 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 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 여받은 경우에만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현행과 같음)

빼는 공과금 등)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 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 용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 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을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 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1. 2. (현행과 같음)
- 3. ------ 피상속인이 진 -----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1. ~ 3. (생략)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u>상속</u> <u>재산</u>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u>상속</u> <u>재산</u>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저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 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
하는 금액을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
<u>에서 뺀다.</u>
1. ~ 3. (현행과 같음)
③ <u>상속취</u>
<u> 득재산</u>
④ <u>상속취</u>
<u> 득재산</u>
∥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u>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u>
것으로 추정하여 「민법」 제
1009조에 따른 상속분(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1. • 2. (생략)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상속인이</u> 변 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

③ (생략)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아니한 경우의 상속분을 말	날한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호	<u> </u>
금액을	
1. • 2. (현행과 같음)	
②	
<u>상속인</u>	돈는
<u> 수유자가</u>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フ	대산
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를	불산
입) ① 피상속인 또는 상속역	<u> </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u>상</u>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 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 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 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u>해</u>
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
세
<u>.</u>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
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
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
<u>익법인등</u>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한 상
<u>속인</u>
②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u>상속세</u> 과 세가액에 산입한다.

1. • 2.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초과하는 가액을 <u>상속세</u>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산입한다.

1. · 2.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1. •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항 각 호의 구분</u>
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에 산입한다.
1.・2. (현행과 같음)
⑤
<u>상속재산 또는 상속취득</u>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 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 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 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 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 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 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u>상속재</u> 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 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신 설>

아니한다.

<u> 재산</u>
범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
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방법
및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
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피상속
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u> </u>
<u>8 7 /11</u>
 1 지소에서 즈 티지스에서 코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
<u> 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u>

<신 설>

② (생략)

-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2억원을 공제한다.
-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
당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u>제3</u>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
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반을 상속취득재산에
<u>으로</u>
인하여 받았거나 받읔 재산(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u>상속재산의</u>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

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
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에
1. ~ 3. (현행과 같음)
②
<u>상속취득</u>
재산의
③ (현행과 같음)
4
상
<u>속취득재산의</u>

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 ⑧ (생 략)
-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 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 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 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생 략)

<u><신 설></u>

⑤ ~ ⑧ (현행과 같음)
9
해당 상
<u> </u>
⑩ (현행과 같음)
① 제1항을 적용할 때 2명 이상
의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았거
나 받을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 |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제3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 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다.

② ~ ⑦ (생 략) <신 설>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 다)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산(按分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만, 상속인 간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의 안분비율 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 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에 -----

---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 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의 가 액에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명 이상 의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았거 나 받을 경우에는 30억원을 상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 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 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u>상속재산</u>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 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영 농상속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 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 만, 상속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의 안 분비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 는 그 합의한 비율로 안분계산 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피상 속인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라 한다)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 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 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 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 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 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 액을 한도로 한다.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이 경우 계산한 한 도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으로 한다.

한도금액 = (A + B) × C

- A: 배우자 및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B: 배우자 및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별로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C: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분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분을 말한다)

2. 30억원

- ② 제67조제11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1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 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 을 공제한다.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 (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 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 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 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 제하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제3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

 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

 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

 액
-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 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경우: 5억원나. 가목 외의 자인 경우: 2억원
- 2. 수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 상속인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 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인 경우: 5천만원
 -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및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원
- ②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성별・연령별기대여명(期待餘命)의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가 제13 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 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 (이하 이 항에서 "증여공제합계 액"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 여공제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 액에서 공제한다.

-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1억원
- 2. 수유자로서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원
- ④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동거가 족으로 한정한다)가 상속세 납 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1. 미성년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65세 이상인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인 경우: 5천만원
- 3. 장애인인 경우: 1천만원에 상 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 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 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
- ⑤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및 수유자 각자가 제1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선순위인 상속인 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받 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 속인이 아니라 수유자로 본다. ⑦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른 동거가족의 범위,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 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로 한다.
- ⑨ 제2항에 따라 증여공제합계 액을 공제받은 상속인 또는 수 유자의 상속세에 관하여는 제 53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여 세"는 "상속세"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 및 수유자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 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 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 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 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 으로만 공제한다.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 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 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

에 태아를 포함한다. <삭 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제 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 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취득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 산가액"이라 한다)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

 산의 가액

② (생 략)<신 설>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 액
 - 가.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 인의 순금융재산가액의 합 계액(이하 이 호에서 "순 금융재산합계액"이라 한 다)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합계 액의 100분의 20(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으로 한다)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나. 순금융재산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합계액
- 2. 해당 상속인의 순금융재산가 액을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 인 중 순금융재산가액이 0보 다 큰 상속인의 순금융재산가 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7조제 11항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취득 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유증등 및 「민법」 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u>거주자</u>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 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u>상속재산</u>이 멸 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 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 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
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
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
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도 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

1009조에 따라 순금융재산가의	<u> </u>
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	_
로 본다.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u>제3조</u>	, <u>-</u>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	<u> </u>
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	_
<u> 의무가 있는</u>	-
- <u>상속취득재산</u>	_
	-
	-
	-
	_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u>-</u>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	<u> </u>
<u>는</u>	-
	-
	_
	_
	-

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u>6억원</u> 을 한도로 한다.

- 1. ~ 3. (생 략) ②·③ (생 략)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24조(공제 적용의 배제)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 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 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만 적용한다.
 -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 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 액
 -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 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 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상속 주택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곱 하여 계산한 ---------- 6억원에 상속주택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의2, 제18조의3, 제22조 및 제23 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 조의2는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 속 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 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 을 말한다)
-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 저 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 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뺀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 설>
 -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 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 른 상속공제액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 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 ② (생략)
-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 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 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
세최저한) ①
<u>이 경우 제</u>
1호의 상속공제액이 상속세 과
세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
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상속공제액

2. ----- 상속취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득재산-----

② (현행과 같음)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 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 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 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 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 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 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 (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신 설>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산출세액
에 그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
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
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의
<u>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u>
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제27조의2(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① 피상속인 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특

수관계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 에서 "우회상속인등"이라 한다) 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제1호 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 속인등이 그 증여받은 재산(이 하 "우회상속취득재산"이라 한 다)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다.

-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한 세 <u>액</u>
 - 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나.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 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 출세액에서 제69조제2항제 2호에 따른 공제·감면세 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우회상속인등이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우회상속취 득재산은 제외한다)에 대 한 상속세액

라. 우회상속인등이 우회상속 취득재산을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한 세 <u>액</u>

가. 우회상속인등이 우회상속 취득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속세액 나. 제1호가목의 재산에서 우회상속취득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상속세액

다. 제1호나목의 재산에서 우 회상속취득재산을 제외하 고 계산한 증여세액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 무가 있는 우회상속인등은 우회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따른 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우회상속인등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등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또는 같은 호나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등 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는 해당 상속세에 대하여 피상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 에 따라 <u>상속재산에 가산한</u>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속인의 특수관계인과 우회상속 인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우회상속취득재산의 합계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재산의 가액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 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 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 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 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 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 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 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3 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

<u> 경우에는</u>
②
<u>상</u> 속취득
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
<u>산</u>
<u>제13</u> 조에 따라 상속
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100)을
<u><후단 삭제></u>

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 |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 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 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 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 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상속취득재산
세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 ①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
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
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
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되는 상속취득
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세산
출세액
<u> </u>
. (2)
2
1.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 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산출세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2. (생략)
- ③ (생략)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 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제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제 과세가액"은 "증여제사"으로 보고, 같은조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③ 저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u>상속재산</u>의 가액에 가산하는 중여재산의 가액은 중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전의 상속취득재산에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의 가액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산출세액	×	전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데54조(준용규정)
<u>"</u> 제3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
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
<u>는"</u> <u>"상속취</u>
득재산"
세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상속취득재산</u>

⑤ (생략)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지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 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u>후단 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u>상속재산</u>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u>6개월(피상속인, 상속</u>
인 또는 수유자가 외국에 주소
를 둔 경우에는 9개월)
<u>이 경우 상속인 또</u>
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전부 또
는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할 수
<u>있다.</u>
②
<u>상</u> 속재산
및 상속취득재산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
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생 략)

 <신 설>

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기한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인이 그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상속인 또는수유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현행과 같음)
- ⑥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및 제14조에 따른 가액 또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등"이라 한다)을 분할(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등에 대하여 유증등으로 받은 상속취득재산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을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분할대상 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등분할기 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상속재 산등을 분할한 후 그 분할에 의 하여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을 기 준으로 계산한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및 제25조제1 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등분 할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 이한 사유로 상속재산등분할기 한까지 상속재산등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 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등분할기 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

<신 설>

<신 설>

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상속재산등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 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등분 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⑧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할 수 있다.
- ⑨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 재산등분할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하여 부 과한다.

<신 설>

<신 설>

제71조(연부연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8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 후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한 결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상

①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유증등 및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연부연납) ① (현행과 같음)

2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u>상속재산별</u>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
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
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
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u>상속재</u>
<u>산</u>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
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
터 10년

나. 그 밖의 <u>상속재산</u>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 제 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 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

1
<u> 상속취득재산별</u>
가
<u>상속취</u>
<u> 득재산</u>
나 <u>상속취득재산</u>
2. (현행과 같음)
3 ~ ⑤ (현행과 같음)
73조(물납) ①

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 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u>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u> <u>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u> <u>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u>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 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 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u>상속재산가액</u>의 2분의 1 을 초과할 것
- 2. (생략)
- 3. 상속세 납부세액이 <u>상속재산</u>
 <u>가액</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u>상속재산에</u>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을 초과할 것

② (생 략)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 제 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u>상속재산</u>

1. <u>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u>
<u>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u>
<u>상속취득재산가액</u> -
0 (천체과 가용)
2. (현행과 같음) 3 상속취득
3 <u>상속취득</u> 재산가액
<u> </u>
상속취득재산에
<u>8 국 제 국 계 단 개</u>
② (현행과 같음)
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
납) ①
<u>상</u> 속취득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생략)
- 2. 상속세 납부세액이 <u>상속재산</u>
 <u>가액</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u>상속재산에</u>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u>상속재산</u>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 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생략)
-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정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u>상속재산</u>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재산
1. (현행과 같음)
2 <u>상속취득</u>
재산가액
<u>상속취득재산에</u>
② ~ ④ (현행과 같음)
5
<u>상속취득재</u>
<u>산</u>
⑥ (현행과 같음)
세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u>상속취득재산</u>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 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 한다.

- 1. ~ 4. (생략)
- ② ~ ⑦ (생 략)
- ⑧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 인이 <u>상속재산</u>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 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 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 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지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제3호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8
<u>상속취득재산</u>
제75조(준용규정)
<u> "상속취득재산"</u>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 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 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 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 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 으로 본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u>제67조나</u>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 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다.

- ② (생 략)
-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 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u>.</u>
제76조(결정·경정) ①
<u>제27조의2제2항, 제67조 또</u>
<u> </u>
 ② (현행과 같음)
③
3

다만, <u>상속재산</u> 또는 증여재산 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 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 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 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 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 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 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 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 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 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u>상속취득재산</u>
④ (현행과 같음)
5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
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취
득재산가액의 합계액
⑥ 세무서장등은 제1항부터 제3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저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 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 <u>상속재산에</u> 대한 상속회복청 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u>상속재산가액</u>이 변동된 경우
-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유증등 및 「민법」 제1009조
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다.
세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
1. <u>상속취득재산에</u>
<u>상속취득재산의</u>
<u> 가액</u>
2

<u>상속취득재산</u>
<u>상속</u>
취득재산
② (현행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3조, 제3조의2, 제13조, 제67조 등 (상속세 과세체계 전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기준을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세표준도 상속인·수유자별로 계산되므로 세수가 감소함
2	제18조, 제20조, 제21조 등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제도가 폐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나, 그 밖의 인적공제가 직계비속 상속인 기준 5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3조, 제3조의2, 제13조, 제67조 등 (상속세 과세체계 전환)	3호: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들의 상속재산 분할 행태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워 세수효과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2	제18조, 제20조, 제21조 등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3호: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구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세수효과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2. 상세 사유

- ①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기준을 상속재산에서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3, §3의2, §10의2, §13, §14, §15, §27의2, §67 등)
 - ㅇ 세수감: 추정곤란
 -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함에 따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분할 효과는 상속인·수유자의 수 및 상속재산 분할 양태에 따라 달라지나,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들의 상속재산 분할 행태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워세수효과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② 기초공제·일괄공제 제도 폐지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개편(§18, §20, §21 등)
 - ㅇ 세수감: 추정곤란
 - 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는 상속인과 수유자의 인원수와 구성(친족관계 등)에 따라 결정되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세수효과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bigcirc	約	당	없	흐
•	91	ו הי	Hλ	

Ⅳ. 작성자

Ο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소보윤	남원우	김완수	김건영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원우	044-215-4361	namwonwoo@korea.kr